

의안번호	제 161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5월 일 (제 300 회)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헌경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1년 5월 3일

##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5월 3일  
발 의 자 : 임헌경, 김도경, 김양희,  
박문희, 김재종, 김동환,  
이광희

### 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집회일 재 조정(안 제4조제2항)
  - 제2차 정례회 집회일 “11월 20일”을 “11월 15일”으로 변경

### 3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11월 20일”을 “11월 15일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집회일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<u>11월 20일</u>에 집회한다.</p>	<p>제4조(집회일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<u>11월 15일</u>에 집회한다.</p>

## 관계 법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44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

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